

三國時代 佛敎가 法律文化에 미친 影響

鄭 淇 雄*

목 차

- I. 머리말
- II. 佛敎 傳來 이전의 韓國의 法律文化
 - 1. 古朝鮮의 八條法禁
 - 2. 夫餘와 三韓의 法律文化
 - 3. 佛敎 傳來 이전의 三國의 法律文化
- III. 三國時代 佛敎가 法律文化에 미친 影響
 - 1. 高句麗
 - 2. 百濟
 - 3. 新羅
- IV. 맺음말

I. 머리말

佛敎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韓國에는 三國時代에 전래되었다. 전래된 이후 高句麗, 百濟, 新羅 모두 불교를 공인한다. 불교가 삼국의 법률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古朝鮮, 夫餘, 三韓의 법률문화와 불교 전래 이전의 삼국의 법률문화를 먼저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불교 전래 이후의 三國의 法律文化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Ⅱ. 佛敎 傳來 이전의 韓國의 法律文化

1. 古朝鮮의 八條法禁

우리 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국가는 檀君朝鮮이다. 단군 조선에 대하여는 三國遺事에 기록되어 있다. 檀君이 平壤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朝鮮이라 하고 國都를 王儉城이라 하였다. 이 때가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이다. 이후 檀君은 1,500여 년간 대대로 神政을 펴 오다가 九月山の 山神이 되었다고 한다.

上古朝鮮에는 일찍부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八條法禁이라는 일종의 不文法이 시행되었는데 그것이 韓郡縣 설치 초기(서기 108년)까지 내려온다.

漢書 地理誌 燕條에 기재되어 있는 八條法禁의 내용은 다음의 것이다.¹⁾

제1조 殺人者는 즉시 死刑에 처한다(相殺 當以時償殺).

제2조 남의 身體를 傷害한 자는 穀物로써 賠償한다(相傷 以穀償).

제3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원칙적으로 所有主 집에 잡혀 들어가 남자는 家奴가 되고 여자는 婢가 되지만 賠償하려는 자는 每人當 五十萬錢을 納入해야 한다는 것이다(相盜 男沒入爲家奴 欲自賠償者 人五十萬).

法禁 제3조에 계속하여 偷盜罪人이 비록 배상하여 自由民이 되었다 하더라도 國俗은 이를 수치로 여겨 婚姻의 상대로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雖免爲民 俗猶羞之 嫁娶無所雙) 내용이 있다. 이는 제3조에 관련된 그 시대의 풍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漢書 地理志 燕條에 法禁이 엄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고 밤에도 문을 닫지 않고, 여자들은 貞操觀念이 강해서 淫亂하지 않았다고 한다(是爲 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婦人貞信 不淫靡). 이 구절을 보아서 八條法禁 중에는 姦淫罪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1) 丘秉朔, 『韓國古代法史』(高麗大學校出版部, 1984), 6-7면; 金容泰·明炯植·羅用植, 『韓國法制史概要』(圓光大學出版局, 1981), 12-4면; 李民樹譯, 『朝鮮傳』(담구당, 1983), 28-9면.

이상의 문헌에서 보면 上古朝鮮 八條法禁의 내용은 殺人, 傷害, 竊盜, 姦淫에 관하여 규율되어 있었다.

衛氏朝鮮이 漢武帝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되고(기원전 109년) 나서 조선의 고토는 한의 식민지 직할령이 되었다. 그리하여 漢四郡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된 것은 高句麗 15대 美川王에 의해서 실현되었다(기원후 313년). 이 기간에 한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고유풍속을 흔들어 놓아서 과거 八條의 法禁이 60여조까지 불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의 내용은 전하여지지 않고 있다.²⁾

2. 夫餘와 三韓의 法律文化

1) 夫餘의 法律文化

북만주 송화강 유역의 넓고 비옥한 부여부족의 초기의 내력에 관해서는 자세치가 않다. 西紀 1세기 부여는 이미 하나의 부족연맹 세력을 이루어 匈奴와 高句麗와 더불어 만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등장하여 번성하였으나 鮮卑族의 침공으로(서기 285년, 서기 346년) 국력이 약화되어 서기 494년에 高句麗에 투항하였다.³⁾

夫餘의 법제에 있어서 殺人罪에는 死刑을 과하는 동시에 그 가족을 奴婢로 하였고, 盜犯에 대하여는 盜物의 12배를 賠償하게 하였는데 이는 사유재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 男女姦淫者와 질투하는 부인(妒婦)에 대하여는 死刑에 처하고 특히 질투하는 부인에 대하여는 시체를 산천에 유기하는 형벌로 다스렸다. 이 시체를 여자의 친정에서 찾아가려면 소나 말을 주어야 내주게 마련이다.⁵⁾

2) 《漢書地理志》〈燕書〉(구병삭, 『전개서』, 9면; 李民樹譯, 『朝鮮傳』, 29면).

郡初取吏於遼東 吏見無閉藏 及賈人往者 夜則爲盜 俗稍益薄 今於犯禁 寢多至六十餘條

3) 韓祐勳, 『韓國通史』(乙酉文化社, 1971), 34면.

4) 구병삭, 전개서, 18면.

5) 《後漢書》〈東夷傳〉[夫餘條](李民樹譯, 『朝鮮傳』, 50면)

其俗用刑嚴急 被誅者皆沒其家人爲奴婢 盜一賁十二 男女淫皆殺之 尤治惡妒

부여는 12월(殷曆 正月)에 迎鼓라는 거국적인 祭天大會를 열었다.⁶⁾ 이 기간에는 刑獄을 다스리지 않고 죄수를 석방한다.⁷⁾ 여름철에 貴人이 죽으면 모두 얼음을 채워 두고, 사람을 산채로 함께 장사하는 殉葬을 한다. 이 순장하는데 있어 사람을 많이 죽일 때는 백여 명까지 죽인다. 그리고 장사를 후하게 지내는 사람은 棺만 있고 槨은 없다.⁸⁾

2) 三韓의 法律文化

衛滿이 古朝鮮의 지배권을 탈취하였을 무렵인 기원전 2세기경에 한강 이남의 지역은 辰國이라는 부족세력이 있었다. 진국에서 가장 유력한 부족세력은 지금의 稷山 지방으로 目支國이었다.⁹⁾ 기원전 4-3세기로부터 기원 후 3세기에 걸쳐서 한강이남의 지역에는 부족세력이 서서히 성장하여 서로 연맹체를 형성하였다. 이 결과 三韓이라고 하는 馬韓·辰韓·弁韓이 성립하였다. 馬韓은 한강 유역 이남의 반도 남부 서반부 지역을, 진한은 경상도의 낙동강 동쪽 지역을, 변한은 낙동강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馬韓에는 54 부족이, 辰韓과 弁韓에는 각기 12의 부족이 있어 이 전지역에 78개의 部族社會가 형성되었다.¹⁰⁾

馬韓에서는 天神을 제사지내기 위하여 諸國邑에 天君이라는 제관 1인을 두고, 또 제국에 각각 蘇塗라는 別邑이 있어 솥대를 세워 방울과 북을 달아매

婦 既殺復戶族山上

三國志 魏志 東夷傳 夫餘條(李民樹譯, 『朝鮮傳』, 79면)

其俗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 竊盜一責十二 男女淫婦人妒皆殺之 尤憎妒已殺 戶之國山上至腐爛

6) 《三國志》〈魏志〉〈東夷傳〉[夫餘條](김용태, 『전계서』, 23면)

以殷正月祭典 國中大會 連日飲食歌舞 名曰迎鼓

7) 《後漢書》〈魏志〉〈東夷傳〉[夫餘條](李民樹譯, 『朝鮮傳』, 49면)

8) 《三國志》〈魏志〉〈東夷傳〉[夫餘條](李民樹譯, 『朝鮮傳』, 79-80면)

其死夏月皆用冰 殺人徇葬 多者百數 厚葬有棺無槨

9) 한우근, 『전계서』, 41면.

10) 《後漢書》〈東夷傳〉[韓條](구병삭, 『전계서』, 21면; 李民樹譯, 『朝鮮傳』, 65면).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韓在辰韓之南 亦有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고 귀신을 섬겼다고 한다.¹¹⁾ 國邑마다 친군이라는 제관을 둔 것으로 보아 삼한시대에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蘇塗에는 죄인이 도망하여 오더라도 모두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¹²⁾으로 보아 일종의 성역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蘇塗라는 뜻은 西域에서 절이라는 말과 같다. 蘇塗에 들어온 자에 대한 소행에 대하여는 善惡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¹³⁾ 이는 도망하여 온 범죄자를 교화하는 사업을 행하였을 것으로 본다.¹⁴⁾

농경을 하는 사회로서 매년 下種이 끝난 5월에는 군중이 모여서 신에게 제사하고 晝夜로 음주와 가무를 즐겼으며, 또한 농사가 끝난 10월에도 그러하였다.¹⁵⁾ 이러한 풍습은 오늘날에도 계승되어 5월의 端午와 10월의 時祭가 있다.

3. 佛敎 傳來 이전의 三國의 法律文化

1) 高句麗

고구려는 朱蒙에 의하여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었다. 고구려는 요동에서 동쪽으로 약 천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남은 朝鮮과 濊貊, 동은 沃沮, 북은 夫餘와 접하고 있으며 都邑은 丸都(通溝)에 있다. 넓이가 약 이천리이며, 戶數가 삼만이다.¹⁶⁾ 고구려는 涓奴, 絶奴, 順奴, 灌奴, 桂婁의 오부족이 부족연맹을 조

11) 《三國志》〈魏志〉〈東夷傳〉[馬韓條](김용태, 『전게서』, 46면; 李民樹譯, 『朝鮮傳』, 107면).

信鬼神 國邑各立一人 主祭天神 各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懸鈴鼓 事鬼神

12) 《三國志》〈魏志〉〈東夷傳〉[馬韓條](김용태, 『전게서』, 46면).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13) 《晉書》〈東夷傳〉[馬韓條](김용태, 『전게서』, 47면; 李民樹譯, 『朝鮮傳』, 131면).

其蘇塗之義 有似西域浮屠也 而所行善惡有異

14) 김용태, 『전게서』, 47면.

15) 《後漢書》〈東夷傳〉[馬韓條](김용태, 『전게서』, 47면; 李民樹譯, 『朝鮮傳』, 67면).

常以五月田竟 祭鬼神 晝夜酒會 群聚歌舞 舞輒數十人相隨 蹋地爲節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16) 《三國志》〈魏志〉〈東夷傳〉[高句麗條] (김용태, 『전게서』, 24면; 李民樹譯, 『朝鮮傳』, 83면).

高句麗 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 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 都於 丸之下 方可

직하고, 처음에는 연노부의 족장이 왕이 되었으나, 그 후 계루부의 족장이 왕이 되었다.¹⁷⁾ 고구려가 부족연맹체에서 고대적 국가체제인 集權的 統制的 체제가 확립된 것은 제6대 太祖大王代(기원 후 53년-145년)부터이다.¹⁸⁾

초기 고구려의 刑制에 관하여 魏志나 後漢書에 의하면 牢獄은 없고 重罪에 대하여는 여러 加罪술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여 죄인을 死刑에 처하고, 그 처자를 몰수하여 奴婢로 삼았다.¹⁹⁾ 또 魏略에 의하면 竊盜罪에 대하여 훔친 물건의 12배를 배상하는 一責十二의 법제를 채용하였다.²⁰⁾ 그리고 魏志에 따르면 초기 고구려의 刑制는 대체로 夫餘의 그것과 같다고 한다.²¹⁾

2) 百濟

백제는 본시 부여씨족을 중심으로 한 몇 개의 집단이 卒本夫餘에서 남하하여 帶方古地인 辰韓에 세워진 왕국으로서, 그 시조는 溫祚이다. 온조는 도읍을 河南慰禮에 정하였다(기원전 18년).²²⁾ 백제가 辰韓에서 건국하여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馬韓의 본토를 잠식하여 宗族國歌로서 체제를 갖춘 것은 제8대 古爾王 27년 -28년(서기 260년-261년)경으로 추정된다.²³⁾

(1) 百濟의 司法機關

백제는 고이왕 27년에 관제를 정하여 六佐平과 十六品の 官階를 두었는

二千里 戶三萬

17) 《三國志》〈魏志〉〈東夷傳〉[高句麗條](김용태, 『전게서』, 25면; 李民樹譯, 『朝鮮傳』, 84면).

本有五族 有涓(涓)奴部 絕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18) 구병삭, 『전게서』, 30면.

19) 《後漢書》〈東夷傳〉[高句麗條] 《三國志》〈魏志〉〈東夷傳〉[高句麗條] (김용태, 『전게서』, 28면; 李民樹譯, 『朝鮮傳』, 54면 · 86면).

無牢獄 有罪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

20) 太平御覽 卷七百八十三 四夷部 高句麗條 所引 魏略(구병삭, 『전게서』, 39면).

21) 《三國志》〈魏志〉〈東夷傳〉[高句麗條](김용태, 『전게서』, 28면).

言語諸事 多與夫魏同

22) 《三國史記》卷二十三 〈百濟本紀〉[第一始祖溫祚王條](구병삭, 『전게서』, 103면).

23) 구병삭, 『전게서』, 105면.

데,²⁴⁾ 이들의 官制는 고구려의 부족연맹의 경우와 달리 中國式 專制王國의 체제를 모방하여 官階와 官職을 분리시켰던 것이다.

이 六佐平은 후세의 六曹와 비슷한 중앙관제인데, 중추적인 중앙관제이다. 각 品官에 해당되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⁵⁾

內臣佐平 - 宮內部는 王命의 出納과 王室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首相格이다.

內頭佐平 - 庫藏事는 재무, 농상공부의 행정을 관장하는 財務·農林·商工長 官格의 부처이다.

內法佐平 - 禮儀事는 문교행정을 담당하는 教育部長官格인 부처이다.

衛士佐平 - 警察, 宮廷 宿衛兵事を 관장하는 親衛長官格의 부처이다.

朝廷佐平 - 刑獄事, 즉 내무·법무를 관장하는 內務·法務長官格의 부처이다.

兵官佐平 - 外兵馬, 즉 국방을 관장하는 國防長官格의 부처이다.

그러므로 백제의 사법기관은 朝廷佐平에서 관할하였다. 그러나 문헌에는 이보다 앞서 多婁王 2년(28년)에 地方官의 濫刑을 방지하고자 死刑囚의 경우에는 京獄에서 覆審하고 王의 裁可를 얻어야 執行케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재판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⁶⁾

(2) 百濟의 刑制

北史에 의하면 謀反·謀叛·退軍·殺人 등의 죄에 대하여는 斬刑, 盜罪에는 流刑, 贓罪에 대하여는 贓物의 배액을 징수, 姦通罪의 경우에 姦婦는 夫家에 들어가 奴婢가 된다고 하였다.²⁷⁾ 謀反罪는 唐律上的 謀危社稷에 관한 죄로서 內亂罪에 해당하며, 謀叛罪는 唐律上的 謀背國從僞에 관한 죄로서 外患罪에 해당되는 것이다.²⁸⁾

三國史記에 의하면 古爾王 29년에 官人으로서 公事에 관하여 재물을 받거

24) 《三國史記》卷第二十四〈百濟本紀〉卷二 [古爾王 二十七年 春正月條](김용태, 『전계서』, 66면).

25) 구병삭, 『전계서』, 108-109면.

26) 《增補文獻備考》中〈刑考七〉, 古典刊行會, 533면(구병삭, 『전계서』, 123면).

飭諸縣死罪 不得便決 悉移京獄按覆 事盡然後 取奏裁 令死罪者 五奏以決

27) 《周書》〈異域傳〉[百濟](李民樹譯, 『朝鮮傳』, 201면); 《北史》卷九十四 [百濟條](김용태, 『전계서』, 69면; 李民樹譯 『朝鮮傳』, 277면).

其刑罰 反叛退軍及殺人者斬 盜者流 其贓兩倍徵之 婦犯姦 沒入夫家爲婢

28) 김용태, 『전계서』, 69면.

나 도둑질을 한 자는 贓物의 3배를 징수하고 終身禁錮刑에 처할 것이라는 습을 내렸다고 한다.²⁹⁾

그리고 多婁王 28년(서기 55년)에 旱災가 들면 罪囚를 모두 특별히 사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³⁰⁾

3) 新羅

신라의 기원은 徐羅伐의 六村의 부족이 부족연맹을 결성하고 及梁部의 朴赫居世를 居西干, 즉 首長으로 선출한데서 비롯된다(기원전 57년).³¹⁾ 기원 후 3세기경에는 弁辰 십이국 중의 하나인 斯盧國은 慶州 지방을 중심으로 한 小部族國家였다. 사료국은 점차 郡小國을 병합하여 제17대 奈勿麻立干代(356년-401년)에 이르러 낙동강 동쪽 경주 일대를 완전히 통합함으로써 大部族聯盟體國家로 등장, 新羅로 비약하게 된다.³²⁾

신라초기에 있어 君長과 君臣은 政廳인 南堂에 모여서 政事를 집행하였으며 중대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君臣이 회합하여 자세히 의논하여 決定하되,³³⁾ 만약 일인이라도 異議가 있으면 否決로 처리하는 和白制度가 있었다.³⁴⁾

Ⅲ. 三國時代 佛教가 法律文化에 미친 影響

29) 《三國史記》卷第二十四〈百濟本紀〉第二 [古爾王 二十九年 春正月條](김용태, 『전게서』, 69면).

下令 凡官人受財及盜者 三倍徵贓 禁錮終身

30) 《三國史記》卷二十三〈百濟本紀〉第一(구병삭, 『전게서』, 125면)

多婁王 二十八年 春夏旱 慮人赦死罪

31) 《三國史記》卷一〈新羅本紀〉第一 [始祖赫居世居西干條](구병삭, 『전게서』, 136면).

始祖姓朴氏 諱赫居世 前 漢孝宣帝 五鳳元年 甲子 四月 丙辰 卽位 號居西干 時年十三 國號徐羅伐 先時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 爲六村

32) 한우근, 『전게서』, 53면.

33) 《隨書》〈東夷傳〉[新羅條](김용태, 『전게서』, 82면).

其有大事 則聚君臣 詳議而定之

34) 《唐書》〈東夷傳〉[新羅條](김용태, 『전게서』, 82면; 李民樹譯, 『朝鮮傳』, 340면).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

1. 高句麗

고구려에는 제17대 小獸林王 2년(372년)에 佛敎가 전래되었다. 前秦王 符堅이 사신과 僧 順道에게 불상과 경문을 보내고, 소수림왕 4년에 다시 僧 阿道가 東晉에서 오니, 尙門寺와 伊弗蘭寺를 지어 그 두 승을 각각 머무르게 하였다.³⁵⁾ 제18대 故國壤王 8년(391년)에는 “佛敎를 崇信하여 求福하라”는 敎旨가 전국에 내려지고,³⁶⁾ 제19대 廣開土王 2년(392년)에 平壤에 아홉 개의 사찰이 창건되었다.³⁷⁾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제20대 長壽王 15년(427년)이므로 당시 수도가 아닌 평양에 아홉 개의 절을 지었다는 것은 광개토태왕이 불교를 매우 진흥시켰음을 알 수 있다.³⁸⁾

고구려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律令이 반포되었다. 소수림왕 3년(373년)에 처음으로 律令을 반포하였으나³⁹⁾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당시 고구려는 東晉과 조공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晉律을 참조한 것으로 생각된다.⁴⁰⁾ 고구려의 율령이 반포된 소수림왕 3년은 符秦의 建元 9년이며, 이것은 東晉의 寧康 元年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匈奴系의 五胡十六國이 난립하던 시기이므로 이들 나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오래 동안 고구려의 문화적 배경이 漢·魏·晉이었으므로 晉의 秦始 律令이 그 모체가 되었을 것이다.⁴¹⁾

고구려에서 불교가 전래된 후 법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의 구체적 예 증은 小獸林王 2년에 酷暴에 未決罪囚의 獄苦를 염려하여 그 詳決을 지체하지 말 것을 명령한 내용이 있다.⁴²⁾ 고구려의 형제는 用法이 준엄하여 犯罪가 적

35) 《三國史記》卷18 [小獸林王] 2年·4年·5年; 《海東高僧傳》卷1〈釋順道〉; 《三國遺事》卷3〈順道肇鹿〉(高翊晉, 『古代佛敎思想史』, 東國大出版部, 1989, 26면).

36) 《三國史記》卷十八 [故國壤王] 9年(고익진, 『전개서』, 39면).

37) 《三國史記》[廣開土王] 2年(고익진, 『전개서』, 39면).

38) 고익진, 『전개서』, 39면.

39) 《三國史記》卷第十八 [小獸林王] 3年(김용태, 『전개서』, 62면).

40) 김용태, 『전개서』, 62면.

41) 宋斗用, 『韓國法制史考』, (進明文化社, 1985), 51면.

42) 增補文獻備考 卷之一百二十七 刑考一, 476面(김용태, 『전개서』, 62면).

小獸林王2年 以署氣太盛 念縲繫之苦 令詳決無得淹滯

게 발생하며 나중에는 길에 흘린 물건도 줍지 않게 되었다고 舊唐書에 기록되어 있는 것⁴³⁾에 비하여 소수림왕 2년의 조치는 매우 관용적이다.

2. 百濟

백제에는 제15대 枕流王 元年(384년)에 東晉에서 胡僧 摩羅難陀가 왔을 때 왕이 극진히 그를 맞이하고, 이듬해 漢山에 절을 지어 10여명의 승려를 入寺시켰다.⁴⁴⁾ 제17대 阿莘王 元年(392년)에 왕은 스스로 불교에 귀의하고 전 국민에게 불교를 믿으라는 下敎를 내린다.⁴⁵⁾ 제26대 聖王 4년(526년)에 謙益이 인도에서 倍達多三藏과 함께 梵本 阿毘曇과 五部律을 갖고 귀국하는데 聖王은 그들을 興輪寺에 있게 한다.⁴⁶⁾ 그리하여 국내의 유명 학승 28인을 소집하여 검역과 함께 律部 72卷을 번역하니 이것이 百濟律宗의 시초가 된다. 다시 曇旭과 惠仁 그 율에 대하여 疏 36卷을 저술하여 聖王에게 헌납하였다. 이에 왕은 毘曇과 新律의 서문을 지었으며, 또한 이 新律을 台耀殿에 모셨다고 한다.⁴⁷⁾ 聖王 19년(541년)에는 梁에 사신을 보내서 涅槃經 등의 疏義를 구해왔다.⁴⁸⁾ 聖王 30년에는 佛像과 經卷을 日本에 전수하였다.⁴⁹⁾ 제29대 法王 元年(599년)에는 철저한 不殺生戒를 시행하여 민가에서 기르는 매를 거두어 모두 방생시키게 하고 또한 물고기를 잡는데 필요한 도구를 모두 불살라 없애게 한다.⁵⁰⁾ 法王 2년(600년)에는 泗水城에 王興寺를 착공하여 제30대 武王 35년(634년)에 낙성된다. 왕흥사는 일명 彌勒寺라고 한다.

성왕은 동왕 16년(538년)에 국도를 熊津에서 泗水城으로 옮기고 국가의 중흥

43) 《舊唐書》〈東夷傳〉[高句麗條](김용태, 『전계서』, 60면).

大體用法嚴峻 少有犯者 乃至略不拾遺

44) 《三國史記》卷二十四 [枕流王] 元年·2年; 《海東高僧傳》卷一〈釋摩羅難陀〉; 〈三國遺事〉卷三〈難陀闢濟〉(고익진, 『전계서』, 26면).

45) 《三國遺事》卷三〈難陀闢濟〉(고익진, 『전계서』, 40면).

46) 李能和, 『朝鮮佛教通史』卷下, 103面(고익진, 『전계서』, 40면).

47) 목정배, 『삼국시대의 불교』(동국대학교 출판부, 1991), 51면.

48) 목정배, 『전계서』, 55면.

49) 《日本書紀》卷十九 [欽明 十三年 十月條](목정배, 『전계서』, 65면).

50) 《三國史記》卷二十七〈百濟本紀〉第五 [法王 1年 十二月條](목정배, 『전계서』, 81면).

을 기한다. 이 때 겸익이 소개한 불교의 戒律은 百濟人의 生活規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戒律을 권장하였으므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불교로 발전할 수 있었고, 국민 전체가 건실하고 근면한 국민이 되었을 것이다.⁵¹⁾

성왕이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涅槃經⁵²⁾ 등의 많은 경소를 요청하였다. 당시 중국에 번역된 대승경전으로는 法華經, 華嚴經, 維摩經, 勝鬘經, 능가경, 大品般若經 등 중요한 것은 모두 번역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경전도 백제에 전래되었을 것이다.⁵³⁾ 백제가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는 것은 미륵삼부경의 연구도 많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왕에 이어서 위덕왕(554 - 597년)과 무왕(600 - 640년)은 불교를 장려하여 각각 40 여년간 국가를 발전시켰다. 무왕에 이은 의자왕도 즉위 2년(642년)에는 州·郡을 순무하고 죄수를 살펴 극형에 처하여야 할 죄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방하였다. 이는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⁴⁾ 의자왕은 초기에는 신라의 40여성을 공격하여 함락하는 승전을 하나, 승전의 교만으로 실정을 거듭하여 의자왕 20년(660년)에 新羅와 唐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된다.

3. 新羅

신라에는 제19대 訥祗王(417 - 457년)때 墨胡子가 들어오고, 제21대 炤知王(479 - 499년)때 阿道가 왔으나 불교의 공인은 받지 못하였다. 제23대 法興王(514 - 539년) 14년에 阿道가 다시 와서 善郡 毛禮家에 이르니, 모례가 놀라던

51) 목정배, 『전계서』, 88면.

52) 열반경의 중심사상은 크게 세가지이다.

하나, 法身·般若·解脫 등 三德秘藏이 모두 涅槃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법신의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야의 지혜를 체달하고, 일체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일념으로 卽入하는 意體의 그 자리에 바로 열반으로 보는 세계가 있다.

둘, 佛身은 不生不滅한다는 것이다. 불신이란 형상적이고 유위적인 몸매가 아니라 진리의 당체이므로, 진리 그것은 불생불멸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신은 常住하게 된다.

셋, 一闍提衆生成佛, 이것은 모든 佛性이 일체의 衆生에게 具有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정배, 『전계서』, 57-9면).

53) 목정배, 『전계서』, 57면.

54) 목정배, 『전계서』, 92면.

서 고구려승 正方과 滅垢疵가 들어왔다가 살해되었음을 알려주고 밀실에 숨어 있게 했다. 그때 뚝에서 짚을 보냈으나 왕이 용도를 모르므로 阿道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뚝의 使臣이 아도에게 예배함을 보고 傳法을 勅許하였다.⁵⁵⁾

그러나 신라의 불교의 공인은 고구려 백제와 같이 왕명에 의하여 간단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귀족세력에 의하여 저항을 받게 된다. 제23대 法興王 14년(527년)에 興輪寺를 창건하려다 귀족의 반대에 의하여 공사는 중단되고 異次頓이 순교하게 된다.⁵⁶⁾ 이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게 된다. 홍륜사의 공사가 다시 속개되는 것은 법흥왕 22년(535년)이다. 신라에 확고한 불교적 기반을 다진 것은 제24대 眞興王이다.

眞興王 5년(544년)에 興輪寺가 완성되자 왕은 그곳에 미륵불을 봉안하고 신라인의 출가를 허용하였다.⁵⁷⁾ 同王 10년에는 梁에서 입학승 覺德이 佛舍利를 가져오자 그것을 백관으로 하여금 홍륜사 앞길에서 맞도록 하였다.⁵⁸⁾ 동왕 12년에 居柒夫가 한강유역의 점거과정에서 高句麗僧 惠亮을 모셔왔을 때 왕은 그를 僧統으로 임명하고, 혜량은 仁王百高座와 八關齋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⁵⁹⁾ 동왕 14년에는 월성 동쪽에 新宮을 짓는 도중 黃龍이 나타나자 그것을 절로 고쳐 黃龍寺라 하였으며, 이 절이 완공되는 동왕 27년에는 祇園寺와 實際寺도 낙성된다.⁶⁰⁾ 동왕 25년에는 陳에서 劉思와 僧 明觀이 釋氏經論 1,700여권을 전해 왔으며,⁶¹⁾ 37년에는 入陳求法僧 安弘이 귀국하여 楞伽經과 勝鬘經 그리고 佛舍利를 바친다.⁶²⁾ 그리고 진흥왕 37년에는 源花를 대신하여 花郎를 만들어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켰다. 동왕 23년에 郎徒 천여인을 이끌었던 화랑 斯多舍이 伽倻 침공 때 異斯夫의 裨將으로 중군하여 큰공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화랑제도는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다.⁶³⁾ 동왕 35년에는 銅重 3千 5百 7斤, 鍍金 198分の 거대한 黃龍寺 丈六尊像(釋迦)이 조성

55) 《海東高僧傳》卷1 〈釋阿道〉(고익진, 『전계서』, 27면).

56) 《三國遺事》卷三 [原宗興法](고익진, 『전계서』, 41면)

57) 《三國史記》卷四 [眞興王 5年](고익진, 『전계서』, 42면).

58) 《三國史記》卷四 [眞興王] 10年

59) 《三國史記》卷四 [眞興王] 12年

60) 『上揭書』 14年·27年

61) 『上揭書』, 25年

62) 『上揭書』, 37年

63) 《三國史記》卷四十四 [居柒夫]

된다.⁶⁴⁾ 장륙존상은 인도의 阿育王이 조성치 못한 것을 新羅에서 조성하였다
는 설화가 있다.⁶⁵⁾

불교를 진흥시킨 眞興王(법흥왕 동생의 아들)은 7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在位 37년(540-575년) 동안 高句麗와 百濟 양국을 견제하여 한강유역을 장
악하고(동왕 14년), 다시 大伽倻를 멸하여 낙동강 전역을 점거하여(동왕 23년)
영토확장을 가져오고, 중국의 北齊와 陳에 사신을 보내는(동왕 25년) 등 新羅
를 일약 강국으로 부상시킨 영주이다.⁶⁶⁾ 진흥왕 이후 신라는 佛敎國家로서
불교이념에 의하여 국가를 통치하며 삼국을 통일한다.

1) 圓光法師의 世俗五戒

圓光이 중국에서 신라에 귀국한 것은 眞平王 22년(600년)이다. 원광은 陳과
隨나라 양국에서 23년간 대승경전을 모두 공부하고 돌아 온 것이다. 원광은
수나라에서 돌아와 加悉寺에 머무르면서 신라인의 윤리관과 불교의 생활관을
확립하려고 占察法會를 행하였다.⁶⁷⁾ 점찰법회란 占察善惡業經을 통해서 불교
에 입각한 도덕관을 세워 이것이 항상 법규가 되게 하여 지계와 懺罪가 생활
에 활용되게 하였다. 이러한 불교생활화의 교화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 歸山
과 箒項의 두 청년이 暇悉寺로 찾아와 “속사가 우매하여 아는 바 없습니다.
부디 한 말씀을 내리시어 평생의 계명을 삼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새로
운 지표를 가르쳐 주기를 열망하였다.

이에 원광은 “佛敎에는 菩薩戒가 있어 그 조항이 열 가지가 있으나 너희들
은 남의 신하와 자식된 몸이니 아마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世俗
에 五戒가 있으니 첫째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일이요(事君以忠), 둘째
는 효도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요(事親以孝), 셋째는 신의로서 벗을 사귀
는 일이요(交友以信), 넷째는 싸움에 나아가 물러서지 않는 일이요(臨戰無退),

64) 《三國史記》卷四 [眞興王] 35年

65) 《三國遺事》卷三 [黃龍寺丈六](고익진, 『전계서』, 45면).

66) 《三國史記》卷四 [眞興王] 各 該當年

67) 鄭柄朝, 「圓光의 菩薩戒思想」, 佛敎史學會編, 『古代韓國佛敎敎學研究』(民族社, 1989), 250면.

다섯째는 생물을 죽이되 가려서 죽이는 것이니(殺生有擇), 너희들은 이 일을 실행하여 소홀히 하지 말라”⁶⁸⁾고 하였다.

원광이 가실사에서 귀산과 추항에게 이야기한 세속오계는 두 청년에게만 기대되는 생활덕목이 아니라 신라인 전체가 지켜야 할 규범이 되었다. 世俗五戒는 화랑의 수행덕목이 되어 신라 청소년을 통일된 이념과 사상으로 결속시킬 수 있었다. 이는 新羅가 高句麗와 百濟의 침입에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圓光은 전쟁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國家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헌한 것이다.⁶⁹⁾

2) 慈藏의 戒律思想

자장이 당나라에 간 것은 善德女王 5년(636년)으로 그의 나이 45세 전후이다. 그는 중국의 終南山에 가서 戒學을 연구하였다. 당시 종남산에는 道宣(596년-667년)이 四分律宗을 흥포하고 있었다. 자장이 왕명에 의하여 신라에 귀국한 것은 善德女王 12년(643년)이다. 당시 신라는 매우 위험한 지경이었다. 선덕여왕 11년에는 백제의 의자왕이 서쪽 국경지역의 40여성을 공략하였고, 백제와 고구려가 합세하여 新羅가 중국대륙으로 향하는 당항성을 격파하였다.

자장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芬皇寺에 머무르고 大國統이라는 직함을 받는다. 지금까지 불교에 관한 모든 일은 國統이 관장하였으나 왕실에서는 국통보다 상위의 직책인 大國統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자장에게 임명하였다.⁷⁰⁾

대임을 맡은 자장은 신라인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하여 黃龍寺에 9층 대탑을 세우고, 그곳에 부처님의 眞身舍利를 모셔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였다. 높이 70미터나 되는 대탑은 선덕여왕 14년(645년)에 완성되었다.

대탑이 완성되자 慈藏은 八關會를 베풀고, 국가에서는 特赦令을 내려 많은 죄수들을 석방시켰다.⁷¹⁾ 그리고 자장은 한 달에 두 번씩 보름과 그믐에 스님

68) 《三國史記》卷四十五〈列傳〉[貴山]; 《海東高僧傳》卷二 [圓光]; 《三國遺事》卷四 [圓光西學]

69) 목정배, 『삼국시대의 불교』(동국대학교 출판부, 1991), 155면 이하.

70) 《三國遺事》卷四〈義解〉五 [慈藏定律]

71) 《三國遺事》卷三〈塔像〉四 [黃龍寺九層塔]; 《三國史記》卷五〈新羅本紀〉第九 [善德王條]; 《三國遺事》卷四〈義解〉五 [慈藏定律]

들이 모두 모여서 지난 보름 동안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반성하는 布薩法會를 행하였다.⁷²⁾ 이는 불교 교단의 승려들이 계를을 출선하여 지키고 이를 일반 백성들도 영향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장은 양산 통도사에 金剛戒壇을 세워 수계의식을 행하였다. 금강계단에는 황룡사 9층탑에 모셨던 사리와 같은 사리를 모셨다.

고구려와 백제의 공략이 심하여져 국가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자장은 국민이 하나로 결속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느껴 황룡사 9층탑을 세우고, 도덕적 국민이 되기 위하여 通度寺에 금강계단을 세워 그 곳을 마음의 귀의처로 만든 것이다.⁷³⁾

3) 元曉의 和靜思想

원효스님은 眞平王 39년(617년)에 押梁郡 佛地村(현재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면 신월동)에서 태어나 스님이 되어 불교의 대승과 소승의 일체 학파를 연구하여 기록상으로 百部 三百餘卷의 註釋書를 남기었다. 그 중 현재 80여부 150여권이 헤아려지며⁷⁴⁾ 현존하는 것만 하더라도 20부 24권이다. 저술을 분류해 보면 華嚴, 法華, 般若, 淨土, 法相, 律, 瑜伽, 中觀, 毘曇, 成實 등 각부 각종의 경론이 포함되어 있다.⁷⁵⁾

元曉는 華嚴學의 대가로서 중국의 학통과는 관계없이 신라 특유의 화엄학을 개창하였다. 원효는 華嚴으로써 불교의 철학적 구경본체를 세움과 함께 불교의 實踐化·大衆化·具體化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였다. 원효의 독창적 사상은 和靜思想이다.

불교는 일체를 융화시켜 一乘의 진리에 이르게 하는 철학적·논리적 종교이다. 이러한 세계로 가기 위한 논리가 和靜의 논리이다. 즉 자타의 대립과 모순, 시비의 모순, 쟁론을 조화·회통하여 하나의 세계로 지향하려는 것이

72) 辛鍾遠, 「慈藏의 佛敎思想에 대한 再檢討」, 佛敎史學會編, 『古代佛敎敎學研究』(民族社, 1989), 371면.

73) 목정배, 『전계서』, 178면 이하.

74) 고익진, 『전계서』, 181면.

75) 목정배, 『전계서』, 201면.

원효의 和諍思想이다.⁷⁶⁾

불법에도 많은 대립과 모순이 있다. 그러나 현상으로 보면 모순과 대립이 있지만 진리의 실상을 깊이 관찰하고 체득한 자가 보면 모순될 것이 없고 또한 대립도 없다. 그러므로 煩惱가 곧 보리요, 生死가 곧 涅槃인 것이다.

和諍의 길로 지향하기 위하여 불교에서 논리적 否定과 肯定, 그리고 大和 合의 단계로 이끌고 간다. 이 대화합의 일승세계로 나가기 위한 논리에 익숙하여야 하며, 또한 신앙적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論理的 認識은 되어 있어도 信仰的 熱情이 없으면 화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불교에서는 논리상 4구의 대립이 있다. 有·無·非有非無·亦有亦無의 4종이다. 유와 무는 완전대립 관계이고, 非有非無는 양자를 다 부정하는 것이며, 亦有亦無란 양자를 다 긍정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 4구중 어느 하나만을 편집하면 과실이 된다고 한다.

원효의 화쟁논리는 이 4구를 다 긍정하면서 또한 다 부정하는데서 이것이 이른바 兩是·兩非論으로서 이율배반적이면서 그대로 無碍의 圓融論理이다. 원효는 어떠한 한 과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異說과 相反論을 열거하고, 그것을 상반되는 듯 상반되지 않고, 각기 그런 이유가 있다하여 다 肯定하고는, 一義에 편집하면 다 그르다고 否定한 뒤에 그것을 會通시켜 화합하여 하나의 원리로 歸一시킨다.⁷⁷⁾

원효의 十門和諍論은 불교사상을 통합하고, 서로 연계성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자기 종파, 자파의 교학만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佛敎敎學이 융통자재하게 실상을 드러내며 동시에 화평을 구현한 진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원효의 思想的 體系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기반이 되었다.⁷⁸⁾

4) 新羅의 法律文化

(1) 法律關係의 官職

i) 司正府

76) 목정배, 『전계서』, 207면.

77) 목정배, 『전계서』, 208면.

78) 목정배, 『전계서』, 209면.

太宗 6년(659년)에 설치되고 景德王 때는 肅正臺로 바뀌었다. 사정부는 紀綱과 習俗을 바로잡고, 貴族이나 관료의 부정을 규탄하는 사무를 관장하였다. 이 관서에는 장관에 해당하는 승이 1명이며, 그 아래에 卿이 2-3명, 佐 2명, 大舍(主簿) 2명, 史 10-15명 등이 있다.⁷⁹⁾

ii) 左右理方府

左理方府는 眞德女王 5년(651년), 右理方府는 文武王 7년(667년)에 설치되었으며 孝昭王 元年(692년)에는 左右理方府로 변경하였다. 左理方府에서는 일반 律令을 입법 관장하고 右理方府에서는 刑事에 관한 입법과 장리를 한 것 같다.⁸⁰⁾ 이 이 관부의 승은 좌우 2명을 두고 그 아래에 각각 卿 3명, 佐 2명, 大舍(主簿) 2명, 史 10-15명 등이 있다.⁸¹⁾ 太宗 武列王 元年(654년)에는 원래의 律令을 詳酌하여 理方府格 60餘條를 입법케 한 사실이 있다.⁸²⁾ 그 내용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다.

(2) 新羅의 刑制

i) 律令

新羅에서는 律令이 法興王 7년(520년)에 반포되었으며,⁸³⁾ 불교가 공인된 직후 법흥왕 16년(528년)에 殺生을 禁하는 敎령을 내렸다.⁸⁴⁾

ii) 犯罪의 類型

三國史記에 의하면 文武王 9년(669년)에 삼국통일에 즈음하여 五逆罪와 死罪 이하의 죄를 범하고 감금 되어있는 자를 모두 석방하라는 기사가 있다.⁸⁵⁾

79) 《三國史記》卷三十八〈雜志〉第七〈職官上〉[司正府條](구병삭, 『전게서』, 178면).

80) 《增補文獻備考》第一百二十七〈刑考〉一 [刑制](구병삭, 『전게서』, 216면).

眞德王 5年「置左理方府掌律令後改議方府」; 文武王 7年「始置右理方府掌刑律」.

81) 《三國史記》卷三十八〈雜志〉第七〈職官上〉[左右理方府條](구병삭, 『전게서』, 181면).

82) 《三國史記》卷五〈新羅本紀〉第五 [太宗武列王條](구병삭, 『전게서』, 181면)

太宗武列王元年「命理方府令 良首等 詳酌律令 修定 理方府格六十餘條」.

83) 《三國史記》卷四〈新羅本紀〉第四 [法興王條](구병삭, 『전게서』, 215면).

84) 《三國史記》卷四 [法興王] 16年(고익진, 『전게서』, 41면).

85) 《三國史記》卷六〈新羅本紀〉第六 [文武王] 九年 二月條(김용태, 『전게서』, 84면).
可赦國內 自總章二年二月二十一日味爽已前 犯五逆罪死已下 今見囚禁者 罪無小大 悉皆放出

여기서 말하는 五逆罪는 唐律의 “十惡”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3) 寺院의 통솔과 寺院田

국가가 寺院을 통솔하기 위하여 중앙 관서내에 「大道署」라는 부서를 禮部에 두었다.⁸⁶⁾ 그리고 각 사원을 관장하는 관서로서 四天王成典, 奉聖寺成典, 感恩寺成典, 奉德寺成典, 奉恩寺成典, 靈廟寺成典, 永興寺成典 등이 있었다.⁸⁷⁾

국가가 직접 사원을 건립하며, 귀족과 부호들도 사원을 건립하게 되어 사원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文武王 4年(664年)에는 사원에 財貨와 納田을 금지시켰다.⁸⁸⁾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에서는 왕과 貴族 그리고 일반 신도들의 시주로 사원은 大土地 所有者가 되었다.⁸⁹⁾

5) 佛敎가 新羅의 法律文化에 미친 영향

(1) 業說과 戒律

i) 業說

佛敎가 新羅에 전래되면서 불교의 교리 중에서 業說이 전래되었을 것이다. 이는 高句麗나 百濟에서도 같다.⁹⁰⁾ 신라에서 구체적 예증을 보면 法興王은 興輪寺의 창건(527년)에 앞서 “蒼生을 위해 修福滅罪의 자리(寺刹)를 만들고 싶다”⁹¹⁾고 하였다.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意志가 있으나 자연에게는 그것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에 대하여 意志의 作用을 가하면 자연은 그에 대해 必然的 反應을 나타낸다. 佛敎에서는 인간의 그러한 意志의 作用을 業(karma)이라 하고, 그에 대한 자연의 必然的 反應을 報라 한다. 業因에는 반드시 果報가 따른다는

86) 《三國史記》卷三十八〈雜志〉第七〈職官上〉(구병삭, 『전계서』, 250면)

大道署(或云寺典 或云內道監) 屬禮部 大正一人 眞平王四十六年置 景德王改爲正 候復稱大正 位自級淹 至阿滄爲之 主書二人 景德王改爲主事 位自舍智至奈麻爲之 史八人

87) 《三國史記》卷三十八〈雜志〉第七〈職官上〉(구병삭, 『전계서』, 250면).

88) 《三國史記》卷六〈新羅本紀〉[文武王] 四年八月條(김용태, 『전계서』, 97면)

禁人擅以財貨田地施佛寺

89) 구병삭, 『전계서』, 251면.

90) 고익진, 『전계서』, 31면.

91) 《三國遺事》卷三〈原宗興法〉

것이 業說이다.⁹²⁾ 業說은 이전의 종교적 관념이 ‘自然이 人間을 지배한다’는 것에 대하여 ‘人間이 自然을 지배한다’는 것에 기초한다. 즉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主體的 意志라는 것이다.

傳統的 巫敎에서 靈魂은 肉身을 遊離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인간의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하여 佛敎에서는 肉身에 있는 곳에 靈魂이 있으므로 “命(靈)과 身(肉)은 一도 아니요 異도 아니다.”⁹³⁾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이 陰이 滅하면 곧 다른 陰이 相續한다.”⁹⁴⁾고 설명한다. ‘陰’이란 靈肉이 非—非異로 和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輪回轉生說을 주장한다.⁹⁵⁾

輪回轉生說에 業報의 관념이 결합되면 今生에 받지 못한 報는 後生에 반드시 받게 된다. 업보의 관념은 宿世·現世·來世의 삼세에 걸쳐 전개되는 業報 輪回說로 발전되어 死後도 業에 따라 天神·人間·阿修羅·餓鬼·畜生·地獄의 육도로 輪回한다고 한다.

불교의 業說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人間의 主體的 意志이므로 인간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善業에는 善果가, 惡業에는 惡果가 반드시 따른다. 그러므로 善業과 惡業에 대한 대가도 각자가 철저히 책임진다. 그리하여 惡業의 구체적으로 몸(身)으로 짓는 殺·盜·淫의 셋, 입(口)으로 짓는 妄語·兩舌·惡口·綺語의 넷, 意志(意)로 짓는 貪·瞋·痴의 셋을 들어 十惡業이라 한다.⁹⁶⁾ 十善業은 십악업의 반대개념이다.

ii) 戒律

불자가 되려면 계를 받아야 한다. 菩薩戒를 받으면 보살불자가 되고, 沙彌戒를 받으면 사미불자가 되며, 比丘戒를 받으면 비구불자가 되는 것이다.⁹⁷⁾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할 때 아난이 “이제까지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았지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단호히 “戒를 스승으로 삼아라.”⁹⁸⁾고 하였다.

92) 고익진, 『전계서』, 32면.

93) 雜阿含 卷三十四 第957經

94) 雜阿含 卷十三 第335經

95) 고익진, 『전계서』, 32면.

96) 中阿含 卷三 思經(고익진, 『전계서』, 33면).

97) 日陀, 『법망경 보살계 1』(다라니, 1992), 55면.

계에는 신도 5계, 사미 10계,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 등의 계율이 있다. 이들 계법은 지금 그 계를 지키는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나에 따라 지켜야 하는 계법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信徒의 5戒는 제1 살생하지 말라(不殺生), 제2 도둑질하지 말라(不偷盜), 제3 사음하지 말라(不邪淫), 제4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 제5 술 마시지 말라(不飲酒)이다.⁹⁹⁾

비구의 견습생인 사미와 비구니의 견습생인 사미니가 지켜야 할 10戒는 제1 중생을 죽이지 말라(不殺), 제2 훔치지 말라(不盜), 제3 음행하지 말라(不淫), 제4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 제5 술 마시지 말라(不飲酒), 제6 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不香鬘塗粉), 제7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를 즐기지 말라(不歌舞作樂), 제8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不坐高大床), 제9 때가 아닌 때에는 먹지 말라(不非時食), 제10 금·은 등을 모으지 말라(不受蓄金銀)이다.¹⁰⁰⁾

梵網經의 보살 10重大戒는 제1 살생하지 말라(殺戒), 제2 훔치지 말라(盜戒), 제3 음행하지 말라(淫戒), 제4 거짓말하지 말라(妄語戒), 제5 술팔지 말라(酷酒戒), 제6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說四衆過戒), 제7 나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라(自讚毀他戒), 제8 내 것 아끼려 남을 욕하지 말라(慳惜加毀戒), 제9 성난 마음으로 참회를 물리치지 말라(嗔心不受悔戒), 제10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謗三寶戒)이다.¹⁰¹⁾

大乘의 戒律인 菩薩戒에서 殺戒를 제일 먼저 두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참된 불자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以慈能與衆生之樂), 가여워하는 마음으로 중생들의 괴로움을 건져 주어(以悲能拔有情之苦) 한다. 보살정신의 결정체인 자비심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살계를 제1의 계로 삼은 것이다.¹⁰²⁾

偷盜戒를 殺生戒 다음으로 중계로 한다. 중생들이 의식주에 의지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생의 의지처를 빼앗는 결과가 되어 남의 생명을 간접적으로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⁰³⁾

98) 後分涅槃經에 있다(일타, 『상계서』, 42-3면).

99) 일타, 『상계서』, 68면.

100) 일타, 『상계서』, 69면.

101) 일타, 『범망경 보살계 2』(다라니, 1992), 14-5면.

102) 日陀, 『범망경 보살계 2』(다라니, 1992), 32면.

偷盜罪의 성립은 다섯 가지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제1 가진 재물이 남의 소유물일 것, 제2 자신이 가진 재물이 남의 소유물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제3 가진 재물의 가치가 5전 이상일 것, 제4 도둑질하겠다는 생각, 끈절도의 동기가 있었을 것, 제5 본래 있던 자리로부터 이동했을 것이다.¹⁰⁴⁾

淫戒는 남녀의 순결을 강조한 계율이다. 比丘 250계를 보면 거의 반은 남녀관계에 관한 일이고, 比丘尼 348계에도 남녀관계에 관한 규정이 많다. 보살계에서 세 번째이나 구족계에서는 제1중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음행은 우리의 청정한 본성을 탐욕의 굴레로 얽어매고 가리우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사윤회의 세계가 전개되기 때문이다.¹⁰⁵⁾

제4계는 망어를 하지 말 것을 밝힌 계이다. 불망어의 범어인 무사바다는 ‘진실한 언어’를 뜻하며, 그릇된 말의 반대인 正語를 뜻한다. 그릇된 말이란 거짓말(妄語), 추악한 말(惡口), 이간하는 말(兩舌), 아첨하는 말(綺語)이며, 이 가운데 특히 삼가야 할 것이 거짓말인 妄語이다.

제5 고주계는 술을 팔지 말 것을 밝힌 계이다. 불교의 근본 5계에서는 다섯 번째에 ‘술을 마시지 말라(不飲酒)’고 한 것과 달리 이 보살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술을 팔아서 갖가지 허물을 유발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승보살도의 정신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⁶⁾

출가중의 具足戒를 설명한 “四分律”에서는 술을 마시는 데 열 가지 손실이 있다고 한다. 제1 얼굴빛이 나빠지고, 제2 기운이 없어지며, 제3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제4 성난 얼굴을 하기 쉽고, 제5 있는 재산과 하던 사업을 그르치게 되며, 제6 질병을 불러일으키고, 제7 싸움과 소송을 좋아하게 되며, 제8 명예는 없어지고 나쁜 이름만 높아지며, 제9 지혜가 없어지며, 제10 목숨을 마치고 나면 삼악도에 떨어진다.¹⁰⁷⁾

iii) 業說과 戒律이 法律文化에 미친 영향

선업을 행하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행하면 악과를 받는다는 의식은 인간이 주체적 의지로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인과응보의 결과

103) 일타, 『상계서』, 76면.

104) 일타, 『상계서』, 81면.

105) 일타, 『전계서』, 124면.

106) 일타, 『상계서』, 189-90면.

107) 일타, 『상계서』, 191면.

는 현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윤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업과 윤회를 믿으면 모든 사람은 악은 짓지 말고 착한 일만 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법을 잘 지키며 착한 일을 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지켜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戒律이 그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信徒 5戒와 보살 10중대계는 모든 規範의 기본이 되었을 것이다.

(2) 八關會

팔관회에 대하여 신라 眞興王 12년(551년) 고구려의 망명승 惠良이 ‘八關之法’을 始置하였다¹⁰⁸⁾는 기록, 진흥왕 33년 10월 20일에 “戰死士卒을 위해 外寺에서 八關會를 열어서 7일만에 끝냈다”¹⁰⁹⁾는 기록 그리고 善德王 14년(643년) 황룡사 구층탑이 완성된 뒤에도 “八關會를 열어서 罪人을 赦免하였다”¹¹⁰⁾는 기록이 있다.

八關會는 불교에서 유래된 것이다. 帝釋天·四天王·龍王은 孝善과 持戒生活를 찬탄하고 좋아한다. 四天王은 자기 밑의 인간세계를 관찰하되 每月 8일과 23일은 使者를 보내고, 24일과 29일은 太子를 보내고, 25일과 30일은 자신이 직접 내려와 사람들의 孝善과 持戒 여부를 관찰하여 帝釋天에 보고한다. 제석천은 보고를 받고 인간들이 孝善과 持戒에 힘쓰고 있다면 阿修羅가 감소하고 天衆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여 크게 기뻐하고, 그 반대의 보고에는 심한 우려를 나타낸다는 것이다.¹¹¹⁾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在家人들에게 위의 6일만이라도(또는 一日一夜만이라도) 阿羅漢처럼 청정하게 八戒를 지킬 것을 권한다. ① 죽이지 말라(不殺生), ② 훔치지 말라(不與不取), ③ 음행하지 말라(不淫), ④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 ⑤ 술 마시지 말라(不飲酒), ⑥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不遇時食), ⑦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不處高廣床), ⑧ 춤추고 노래하는 것, 기묘한 윤희를 멀리 하며, 몸에다 향수를 바를거나 장신구를 걸치지 말라(遠離作鬘技樂香華塗身). 한 달에 여섯 번 이러한 여덟 가지 계를 지키는 것을 팔관제라고 하는데, 이

108) 《三國史記》卷三十四 [居柒夫].

109) 《三國史記》卷四 [眞興王] 33年.

110) 《三國遺事》卷三 [黃龍寺九層塔]

建塔之後 設八關齋 赦罪人

111) 長阿含 卷二十 世紀經 忉利天品(고익진, 『전계서』, 68면)

러한 八關祭를 지키면 三惡趣에 떨어지지 않고 불법을 잘 배우며 彌勒會上에서 만나는 큰 공덕이 있다.¹¹²⁾

신라의 팔관제는 순수한 불교적 행사가 아니라 이전부터 전래되던 제천의례를 불교적 행사에 흡수시킨 것으로 본다. 이것은 高麗 太祖의 訓要 재6조에 “八關은 天靈과 五嶽名山 大川龍神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¹¹³⁾

팔관회가 열리면서 국민들의 여덟 가지 계율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에 큰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준법정신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3) 仁王百高座會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에는 “戰亂 등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거든, 백개의 佛·菩薩·羅漢像과 백개의 比丘像을 모시고 四大衆·七衆이 함께 백명의 法師를 청하여 般若波羅蜜多 講說을 들어라. 백개의 高座 앞에는 백개의 등과 향을 마련하고, 백개의 色花로 삼보에 공양하고, 三衣什物로 법사를 공양하라. 그리하여 일일 두 번 반야바라밀다를 설하면 國土에 있는 一百部 鬼神과 그 각 一百部 鬼神眷屬이 그 經을 듣고자 國土를 수호해 줄 것이다”¹¹⁴⁾라고 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百名の法師가 一百 高座에서 般若經을 강설하는 것을 百高座講座라고 한다.

불교에서 帝釋天은 欲界 忉利天에 계시지만, 그 위에 欲界 4天, 色界 18天, 無色界 4天이 있다. 이들은 모두 부처님에 귀의하여 불법수호를 다짐하고 있다. 부처님은 제석천의 위에 계신다. 그러므로 帝釋天을 主尊으로 모셔 農畜의 豐産을 비는 八關會에 대하여, 부처를 우러러 국가의 수호를 비는 종교의례로서는 百高座講座가 발달하였다.¹¹⁵⁾

신라에서는 仁王百高座가 眞興王 12년(551년), 眞平王 35년(613년), 善德王 3년(636년)에 열리고, 그 뒤에도 聖德王 5년(706년), 惠恭王 15년(779년), 憲康王 2년(876년), 憲康王 12년(886년), 定康王 2년(889년), 眞聖王 1년(887년), 景哀王 1년(924년)에 열리었다. 이들 百高座는 聖德王 5년의 奉德寺에서 행해진 것 외

112) 增壹阿含 卷三十八 第2經(고익진, 『전게서』, 68면).

113) 고익진, 『전게서』, 69면.

114) 仁王般若經 卷下 護國品(고익진, 『전게서』, 71면).

115) 고익진, 『전게서』, 73면.

에는 전부 黃龍寺에서 행해졌다.¹¹⁶⁾

仁王百高座會는 國家가, 전란이나 또는 왕이 질병에 걸리는 등,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처님께 기원하여 국난을 극복하려는 종교의례로서, 이를 통하여 佛敎가 護國을 위하여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4) 轉輪聖王의 思想

왕권 강화에 유익한 불교의 교리가 전륜성왕사상이다. 轉輪聖王은 正法에 입각한 善政을 베풀어 法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고 사문에게 諮問을 구하며, 晩年에는 出家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王이 세상에 출현하면 찬란한 金輪을 비롯한 七寶(輪·象·馬·珠·女·居士·兵)가 저절로 갖추어져 武力을 사용하지 않고도 天下가 正法으로 통일된다는 것이다.¹¹⁷⁾

신라 제24대 진흥왕은 동왕 5년에 최초의 국영 가람을 興輪寺라 명명하며, 아들의 이름을 長子를 銅輪, 次子를 舍輪(또는 金輪)이라고 한다. 晩年에 眞興王은 출가하여 호를 法雲이라하였으며, 王妃도 출가하여 永興寺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진흥왕이 전륜성왕 사상에 의하여 국가를 통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¹⁸⁾

轉輪聖王修行經에는 轉輪聖王이 통치하는 이상적인 國家의 특징으로 다음을 든다. ① 물자가 풍부하며 백성의 생활이 쉽고 안락해진다. ② 百姓은 불교에서 가르치듯이 숭고한 德性을 지니며 實行하게 된다. ③ 法을 지킨다. ④ 全世界의 산과 강의 차이가 없어지고 교통이 편리하며 촌락이 서로 가까워진다. ⑤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和合하며, 言語도 한 종류이다. ⑥ 寶石이 남아돌 정도로 많이 나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¹¹⁹⁾

IV. 맺음말

佛敎가 三國時代에 전래되어 韓國의 法律文化에 미친 영향을 보면 佛敎는

116) 고익진, 『전계서』, 71-2면.

117) 長阿含 卷七 轉輪聖王修行經(고익진, 『전계서』, 36면)

118) 고익진, 『전계서』, 46면.

119) 中村元著, 차차석역, 『불교정치사학회』(불교시대사, 1993), 118면.

국민 각자에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그 果報를 받는다는 因果應報의 사상을 심어 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輪回思想을 통하여 사람의 생이 한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極樂世界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많이 행하면 다음 생에는 地獄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規範을 스스로 지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은 戒律이 하나의 잣대가 된다. 그 결과 국민 스스로 信徒 5戒에 나오는 戒律을 지키는 것은 생활의 습관이 되어 버려 信徒 5戒 중 죽이지 말라(不殺生), 도둑질하지 말라(不偷盜), 사된 음행을 하지 말라(不邪淫),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는 일상생활에서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佛敎는 高句麗·百濟·新羅에 전래되어 각국에서 護國佛敎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통치자인 王에 의해 적극적 비호를 받는다. 삼국이 모두 불교를 장려하였으나 불교적 사상에 철저한 新羅가 삼국을 통일하였으며, 統一新羅는 불교이념에 의하여 통치된 佛敎國家이다.

佛敎의 和合과 慈悲의 정신은 三國의 통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 삼국을 통일한 新羅는 불교의 화합정신에 의하여 百濟와 高句麗의 유민과 힘을 합쳐 唐의 軍隊를 축출하고 石窟庵으로 대표되는 고도의 佛敎文化를 발전시켰다.

The Influence of Buddhism on the Korean Legal System of the Three Kingdoms(*Kokuryo · Baekje · Silla*)

Jung, Ki-wung*

This paper analyses following aspects of the influence of Buddhism on the legal system of the Three Kingdoms:

Buddhism implanted into Koreans the doctrine of karma effect that good deeds may be paid with good rewards and bad deeds with bad rewards. Especially through the thought of transmigration Koreans came to learn that man's life does not end in this world but continues to exist even after his death. That is to say, the accumulation of good deeds in this world enables man to be born in *Nirvana*, while the accumulation of bad deeds leads man to hell. As Buddhist precepts define the standard of good or bad deeds, Koreans made it a rule to observe the five precepts of Buddhist devotees. Especially, they considered the following precepts as the invariable principle of their ordinary life: don't kill, don't steal, don't commit adultery, and don't lie.

Korean Buddhism contributed to the defence of the nation. Though Buddhism was encouraged alike in *Kokuryo*, *Baekje*, and *Silla*, *Silla* could unify Korea because it had been more faithful to Buddhist principles than the other two kingdoms. The Unified *Silla* was founded by Buddhist ideology.

The Buddhist spirit of benevolence and harmony took a great role in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e Unified *Silla* was reinforced by the harmonious spirit of Buddhism, and withdrew the Chinese(Tang) troops with the help of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Law,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wandering person of *Baekje* and *Kokuryo* kingdoms. Furthermore, the Unified *Silla* had developed the advanced Buddhist culture represented by *Seokgulam*.